

(붙임1)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고지)서

본 조치예정내용은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금융감독원장 결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과의 사전협의 없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외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	성명(명칭)	육상○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47-22번지			
2.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별첨> 참조				
3. 조치예정 내용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4. 관련 법 규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및 제4호				
5. 의견제출방법	제출처	기관명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담당검사역	최 대 현
		주 소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7층	전화번호	053)760-4017
		전자우편주소	ccooya04@fss.or.kr	모사전송	053)764-8367
	기 한	2018년 6월 4일까지			

※ 유의사항

가. 본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고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 제35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위의 조치예정내용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금융감독원장 결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조치예정내용

-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구 분	종 류
기관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인가·허가 또는 등록 취소 ○ 기관경고 ○ 영업·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기관주의 ○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임원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임권고 ○ 주의적 경고 ○ 업무집행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주의 ○ 문책경고
직원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직 ○ 견책 ○ 정직 ○ 주의 ○ 감봉

- 과징금·과태료

- 보험업법에 의거 과징금(과태료) 부과

- 자율처리 필요사항

- 직원의 위법·부당사실을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적의조치하도록 의뢰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4조 제4항 및 동 시행세칙 제51조 제4호, 제64조 제2항에 근거한 사실의 통지로서 개별 금융업법령상 임원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조치생략

- 이미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부당 행위가 추가 발견되는 경우 종전 제재시 함께 제재하였다도 제재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조치생략

라.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불임 의견진술서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처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검사역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귀하께서는 금융감독원(제재심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불임 의견진술서 서식에 제재심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출석 의견 진술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 금융감독원은 당사자의 권익보호 및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의견진술 및 대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검사국 직원의 배석 없이 진술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KB손해보험(주) 포항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인 육상○는 2015.6.19.~2016.5.25. 기간 중 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김재○ 등 보험계약자 5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18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 위 귀책사항과 관련하여 귀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에 대한 행위책임이 있음

